

中國行政訴訟制度의 確立과 發展

中國南開大學 傅士成

중국의 행정소송제도란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어떤 구체행정행위가 그들의 합법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의 참가 하에 행정분쟁안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제도이다. 신 중국 창립 직전, 중공에서는 구정권의 《육법전서》폐지를 명문화 하여 공포한 법령을 선포하였다. 즉, 구정권의 일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인데 구정권의 행정소송제도도 폐지된다. 형식적으로 볼 때, 신 중국의 행정소송제도와 구정권의 행정소송제도는 離承(상속)성이 없다. 본 문에서는 주로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확립과 발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新中國行政訴訟制度의 確立科程

중국행정법학계에서는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확립의 시간과 표지에 대해 두개 관점 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의 관점은, 1982년에 제정한 《민사소송법》(시행)이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을 상징한다고 여긴다. 그 주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시행) 제3조 제2항에 “법률이 제정한 행정안건은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법원이 행정안건을 심리함에 있어서의 절차법의 의거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로부터 신 중국 법원의 행정심판작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시행)의 제정과 실시는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확립의 표지이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1989년 4월 4일에 제정 반포되었고 1990년 10월 1일부

터 정식 실시된 《행정소송법》이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을 상징한다고 여긴다. 그 주요한 이유는, 1982년에 제정한 《민사소송법》(시행)이 비록 법원에서 행정안전을 심리하는데 적용되는 절차법을 규정하였지만, 법원의 행정안전심리는 여전히 행정상대방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안하였는가 하는 단행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언급된 영역에서든, 법원에 기소된 행정안전의 수량에서든, 행정소송은 모두 전면적이지 못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82년의 《민사소송법》(시행)은 행정안전을 심리하는 절차법으로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혹은 차용)하는 성질을 띠고 있을 뿐,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82년의 《민사소송법》(시행)을 행정소송제도확립의 표지로는 볼 수 없다. 1989년 4월 4일에 반포되어 1990년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된 《행정소송법》이야말로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정식확립을 상징한다. 중국 행정법학계에서는 두 번째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데, 필자도 두 번째 관점에 치우치고 있다.

물론 그 어떤 관점의 소유자이든 모두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상, 행정분쟁을 처리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그의 직권을 행사하는 가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행정소송제도는 그 어떤 시각에서 갑자기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동행들의 중국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입법의 각도에서 중국행정소송제도확립과정에 대해 간단히 회고하고자 한다.

제1단계는 1949년부터 1982년까지이다. 이 단계의 기본특징은 통일된 행정소송절차법이 없이, 행정소송에 관한 개별적인 특별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신 중국 건립초기에 根本(기본)법의 작용을 한 《공동강령》은 일찍 “인민과 인민단체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무인원의 위법실직행위에 대해 인민감독기관이나 인민사법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1954년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 규정을 沿續하였는데 이는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을 위해 헌법성적인 의거를 제공하였다. 그 동안, 1949년 12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 비준한 《최고인민법원조직조례》에서는 최고인민법원에서 행정재판법정을 설립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행정재판기구의 설립을 위한 《조직법》적인 의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국초기, 방치되었던 일들이 다시 행해짐으로 인해, 상술한 법률규정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50년대 말 이후, 법률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법률허무주의사상이 점차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정치수

단이 각종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행정분쟁의 해결을 포함한 주도적인 방면에서, 非규범적인 정책, 명령이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주요수단으로 되었으며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단지 서면상태의 법률규정에 그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줄곧 중공11기3중 전회(1978년)의 소집 및 그 이후의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제2단계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이다. 이 단계의 기본특징은 부분적인 행정분쟁이 통일된 민사행정법에 의거하여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규정하는 단행법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1982년 3월 전국인대에서 《민사소송법》(시행)을 제정하여 반포하였으며, 그 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법의 제3조 제2항에는 “법률이 제정한 행정안건은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 실시는 행정소송이 정식으로 입법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표시한다. 이 전후로부터 줄곧 1990년까지, 중국은 130여 개의 단행법률에서 행정소송의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비교적 전형적인 것은 1982년에 반포한 《식품위생법》, 1986년에 수정하여 1987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한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단지 행정처벌과 소수 몇 개의 행정처리결정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다. 또 그 동안, 행정소송의 특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인민법원에서 경제행정안건을 심리하는데 중재하지 말아야 할 데 관한 통지》, 《인민법원에서 치안행정안건을 심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임시규정》을 반포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였는데 이는 또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부터 분리되려는 경향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동안,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도 1986년부터 잇따라 행정재판법정을 세웠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도 1988년에 최고인민법원이 행정재판법정을 설립하는 것을 비준하였고 행정재판법정책임자의 임명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1989년 초까지 전국에는 이미 26개 고급법원(그 때 전국에 도합 30개 고급법원이 있었음), 242개 중급법원(중급법원 총수의 63.5%를 차지함), 1154개 기층법원(기층법원총수의 39%를 차지함)에서 행정재판법정을 설립하였다. 1987과 1988년 2년 기간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도합 14513건의 행정안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에는 치안, 토지, 세관, 식품위생, 의약, 환경보호, 공상, 세무 등 많은 행정관리부문이 포함된다. 2년 내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한 행정안건은 도합 13428건인데, 그 중 被訴(피소) 행정행위를 유지한 것은 7079건, 被訴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은 1321건,

被訴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부분 변경한 것은 674건, 原告撤訴(원고가 소송을 취소)한 것은 3354건이다. 행정소송실천활동과 부응하여 이 단계에서의 행정소송관련이론 연구도 空前활약하였는데 이는 독립적인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을 위한 필요한 이론준비와 실천기초를 제공하였다.

제3단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단계의 기본특징은 행정소송이 하나의 독립적인 소송활동으로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행정소송제도가 확립되었고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1990년 10월 1일 행정소송법의 정식실시를 표지로,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1991년,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재판경험을 종결하는 기초 위에서 《〈행정소송법〉의若干문제를 철저히 집행할 데 관한 의견》(도합 115조)을 반포하였다. 그 해, 최고인민검찰청은 《행정소송법 제64조를 집행할 데 관한 임시규정》(도합 19조)을 반포하여 《행정소송법》으로 하여금 재판과 검찰기관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게 하였다. 이 기간에,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또 선후로 행정소송실천가운데서 부닥친 문제에 대해 많은 批復(회답)와 答復(회답)을 하였는데 이는 법원에서 행정안전을 심리하는 각 부분(環節)을 더욱 개선하고 완벽하게 하였다.

2000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실시한 후의 10년 아래의 경험을 종결하고 1991년에 반포한 《〈행정소송법〉의若干문제를 철저히 집행할 데 관한 의견》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하여 《〈행정소송법〉의若干문제를 집행할 데 관한 해석》(도합 98조)을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10년이래(1990년이래)의 사법심사규칙과 정책의 변천은 이번에 새로 반포한 사법해석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¹⁾

행정소송제도의 발전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접수하고 심리한 일심행정안전정황통계표에서 진일보로 설명을 얻을 수 있다.(그림 참조)²⁾

1) 甘文著: 《행정소송법사법해석의 평론》, 중국법제출판사 2000년版, 제1폐지.

2) 中華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행정심판庭 編: 《행정執法과 행정심판참고》, 법률출판사, 2000년版, 제294폐지.

전국 각급 인민법원에서 접수하고 심리한 일심행정안전정황통계표(1989-1999)

년도	일심收案 (접수안전)	일심結案 (결안)	그 총				행정배상 안전의 심리	비소집행 안전의 접수처리
			유지	취소	변경	직책이행		
1989년	9934	9742	4135	1364	587			7455
1990년	13006	12040	4337	2012	398			9919
1991년	25667	25202	7969	4762	592			15687
1992년	27125	27116	7628	5285	480	196	178	65156
1993년	27911	27958	6587	5270	430	773	149	88971
1994년	35083	34567	7128	6547	369	456	299	136795
1995년	52596	51370	8903	7733	395	924	424	191258
1996년	79966	79537	11549	11831	1214	1493	484	256897
1997년	90557	88542	11230	12279	717	1864	1075	270133
1998년	98463	98390	13036	15214	429	1035	4854	326783
1999년	97569	98759	14672	15251	764	2002	2785	362863
합 계	557877	553223	97174	87548	6375	8743	10248	1731917

행정소송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配套입법도 비교적 큰 진전을 가져 왔다. 1991년 국무원에서 《행정재심조례》를 반포하였고 1999년에 또 《행정재심조례》의 실시경험을 종결하는 기초 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행정復議(재심)법》을 반포하였다; 1994년에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1996년에는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2000년에는 《입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러한 모든 법률은 모두 행정소송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력한 지지, 보장과 보조작용을 제공하였다.

2. 중국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문제

중국 《행정소송법》은 전부 11장 75조로 되었다.

제1장: 총칙, 주로 《행정소송법》의 입법목적과 법원에서 행정안건을 심리하는데 응당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다. 그 중, 입법목적은 “인민법원이 정확하고 제때에 행정안건을 심리하도록 보증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행정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게끔 유지하고 감독한다”(제1조). 법원에서 행정안건을 심리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은 주로: 법원의 독립행사재판원칙: 사실을 근거

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합법성적인 심사원칙: 합의, 회피, 공개심판과 兩審終審원칙: 당사자 소송지위평등원칙: 검찰감독원칙 등(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이다.

제2장: 안전접수범위. 본 장에서는 공정열거와 부정열거의 형식으로 법원에서 접수하는 행정안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법원에서 접수하는 공정열거사항으로는: (1) 행정처벌에 복종하지 않는 것; (2) 행정적인 강제조치에 복종하지 않는 것; (3)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지주권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4) 법정조건에 따라 證(증명서), 照(면허증) 등을 신청하였다고 여기는데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거절하였거나 회답해 주지 않는 것; (5) 人身權보호의 법정직책을 이행할 것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이 행을 거절하였거나 회답해 주지 않는 것; (6)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7)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인정하는 것; (8) 행정기관이 기타 人身權과 재산권을 침범한다고 인정하는 것. 그 외에 법률, 법규(특별법)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행정안건은 비록 공정열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접수하는 사항에 속한다(제11조).

이 장에서의 부정열거사항으로는 즉, 법원에서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1)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 (2) 행정법규, 규칙 혹은 행정기관이 반포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 명령 등 추상적인 행정 행위; (3) 행정기관이 그의 작업인원에 대한 상벌, 任免 등 내부행정행위; (4) 법률이 규정한 행정기관에서 최종 결재하는 구체행정행위(제12조).

상술한 공정열거와 부정열거 외에 안전접수범위에 대해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는 또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서는 구체행정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확대하여 이해하면, 오직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접수하는 행정안건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제3장: 관할, 주로 각급 법원에서 제1심 행정안건을 접수하는 권한과 분담에 대해 기술적인 규정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더 많은 소개를 하지 않겠다.

제4장: 소송참가자, 주로 원고와 피고 및 그의 자격에 대해 규정짓는다. 그 중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고는 행정기관 외에도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행정권을 수여하다)하는 조직도 행정소송의 피고로 충당될 수 있다.

제5장: 증거, 주로 증거의 종류, 피고의 舉證責任과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해 규정짓는다.

제6장: 기소와 접수, 주로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연결, 소송시효, 기소 혹은 접수의 조건 등에 대해 규정짓는다. 그 중에서 행정재심이 행정소송의 전치조건으로 되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법 자체는 비록 강제성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특별법규정을 인정하였다. 즉 특별법에서 재심전치를 규정하였다면 재심전치를 실행하고, 특별법이 재심전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선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선택한다.

제7장: 심리와 판결, 주로 법원에서 행정안전을 심리하는 많은 環節에 대해 규정짓는다. 그 중에서, 소송이 정지함이 없이 집행되는 규정, 중재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모두 비교적 특색이 있는 규정이다.

제8장, 제9장, 제10장에서는 분별하여 집행, 侵權배상책임, 섭외행정소송에 대해 규정짓는다. 제11장은 부칙이다.

《행정소송법》의 반포와 실시는 중국법제건설의 하나의 큰 사건이며 중국이 문명하고 민주적인 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 10여 년의 행정소송실천을 거쳐 행정소송법도 일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이 있다.

첫째, 안전접수범위에 관하여. 앞의 문장에서 서술했듯이 《행정소송법》은 안전접수범위에 대하여 개괄식(제2조), 긍정열거식(제11조)과 부정열거식(제12조)을 서로 결합하는 규정형식을 채택하였다. 그 중, 하나의 관건성적인 개념 — 구체행정행위를 언급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계나 실무界 모두가 비록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많은 이해와 인식을 제출하였지만 공동인식을 취하기엔 아직 멀었다. 게다가 실천 속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체행정행위를 식별하는 표준도 제공되지 않았기에, 실천가운데서 경상적으로 하나의 행정행위가 도대체 구체행정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불일치의 발생을 초래함으로 이 행위의 기소에 대한 법원접수에 영향을 준다. 이 외에 긍정열거와 부정열거사이에도 일정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선은 긍정열거와 부정열거간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즉 긍정열거에도 속하지 않고 부정열거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실무에서 보통 긍정열거를 표준으로 삼아 행정안전의 접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에서 접수하는 행정안전의 범위로 하여금 인위적인 제한을 받게 한다.

둘째, 합법성적인 심사원칙에 관하여. 합법적인 심사원칙은 행정소송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원칙에는 두 항목의 내용

을 포함한다. 그 중 하나는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중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만 심사하고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심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중에서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만 심사하고 구체행정행위의 합리성은 심사하지 않는 것이다. 합법성적인 심사원칙이 일으키는 작용은 일면으로 법원에서 접수하는 행정안건의 범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인데, 즉 구체행정행위 외의 기타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의 접수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간접적인 것이다. 다른 일면으로 법원에서 구체행정행위를 심사하는데 대해 합법성적인 심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직접적인 것이다. 합법성적인 심사원칙은 또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문제에 직접 연관되는데(觸及), 행정소송 중에서 被訴행정행위가 합법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被訴행정행위가 합법적인가의 여부를 예워싸고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법권의 기능과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합리적이나, 적당하나의 여부는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상술한 원칙을 확정한 동시에 또 법원이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변경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실제 운행에서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비평을 받았다.

셋째, 판결의 종류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54조에서 4가지 판결형식을 규정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판결유지, 판결취소, 판결변경과 판결이행이다. 이 4가지 판결형식은 각각 합법구체행정행위, 위법구체행정행위, 顯失公정행정처벌, 행정부작위에 대해 만들어 낸 것이다. 실천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판결형식도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었는데 이를테면 상대방이 행정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할 때에 이르러 피고의 직책이행을 재판결한 것이 이미 실질적인 의의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판결종류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판결형식에서 법정주의를 실시하는 중국행정소송으로 말 할 때 곧 하나의 비교적 큰 문제이다.

상술한 몇 개 방면의 문제들이 비록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은 벌써 행정소송제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존재는 또한 행정소송제도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3. 中國行政訴訟制度의 새로운 發展

《행정소송법》은 1990년 10월 1일 실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벌써 10년 남짓하다.

비록 《행정소송법》 자체는 아무런 수정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점차 학계와 실무 중에서 《행정소송법》에 대한 일부 세로운 이해의 인식과 의견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의견은 2000년 3월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행정소송법〉若干문제에 관한 해석》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구현된다.

첫째. 안전접수범위를 규정하는 《행정소송법》의 이해사고방식을 조정하였다.

앞의 문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안전접수범위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비록 개괄적 규정, 긍정열거규정과 부정열거규정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행정소송법》 실시초기에 입법기관, 이론계와 실무계에서는 거의 일치하게 긍정열거규정으로써 안전접수범위를 이해하였다.³⁾ 이는 행정소송 안전접수범위를 좁혔다. 세로운 《사법해석》은 원래의 이해를 타파하고 넓은 범위의 긍정과 개별배제의 형식으로 안전접수 범위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이해하였으며 구체행정행위라는 이러한 논쟁이 있는 문제를 회피하였다. 최고법원에서 이러한 해석을 진행한 사고방식은 행정소송법을 수정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될수록 법원의 행정안전접수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행정소송제도의 하나의 선명한 변화이다.

둘째. 판결종류의 증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4가지 판결종류 외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정신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 확인판결과 배상판결의 형식을 명확히 하였다. 최고법원의 《〈행정소송법〉에 관한 사법해석》 제57조에서는 “인민법원에서 被訴 구체행정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나 이것이 판결유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송청구를 기각 당할 경우에 그의 합법이나 유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이나 형식일 경우에 인민법원에서는 응당 被訴구체행정행위가 위법이나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피고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으나 판결에서 그의 법정직책의 이행을 책임지도록 명령하여 이미 실제의의가 없는 것; (2) 피소구체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것; (3) 피소구체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제58조에서는 “피소구체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이 구체행정행위를 철회함으로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피소구체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피소행정기관에서 상응한 보완조치를

3) 전번기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부위원장이며 법제공작위원회주임이신 王漢斌이 1989년 3월 28일 7기인대2차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행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초안)에 관하여》의 설명이다.

취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확인판결과 배상판결은 사법해석이 더욱 명확한 판결형식으로써 이는 최소한 형식상에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판결종류를 증가시켰다.

셋째, 被訴실행의 若干의 제도環節을 충실히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66조에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법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않거나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인민법원에게 강제로 집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소송법》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바로 전에 제정한 단행법규정상의 행정기관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하는 두 개 형식이 공존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하는데 대해, 즉 비소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짓지 않았다. 199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행정소송법〉의若干문제를 철저히 집행할 데 관한 의견》에 대해 일부 細化한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실천가운데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 놓았다. 2000년 3월 최고인민법원의 새로운 《사법해석》이 비소행정집행의 일부 제도 環節을 충실히 하였는데, 주로: (1) 신청하여 집행하는 조건(제86조)을 명확히 하였다. (2)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 외에 또 구체행정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권리인 혹은 그의 상속인, 권리상속인을 비소행정집행의 신청자(제90조)로 한다. (3) 법원행정재판법정에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제93조); (4) 법원에서 裁定하여 집행되지 않는 표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것은 각각: A, 사실적인 근거가 분명히 모자라는 것; B, 법률적인 의거가 분명히 모자라는 것; C, 기타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被執行人의 합법권익을 손상하는 것이다.

신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확립은 비교적 굴곡적인 역사과정을 거쳤다. 행정소송제도가 확립된 후 학계와 사법계에서는 실천경험을 총괄하는 기초 위에 《행정소송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행정소송제도로 하여금 많은 구체 環節에서 완벽함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소송제도를 진일보 개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정치, 법치국가의 건설에 적응시키고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학계와 실무계가 직면한 큰 과제이다.